

《2023. 4월 2차》

청렴메아리

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 : 경조사비

청렴수원

관련 내용

○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

· 음식물 : 3만원 / 선물 : 5만원 / 경조사비 : 5만원

관련 판례

- 건설회사 대표A는 00시 공사 계약실적이 있는 직무관련자로 00시 B과장의 장남결혼식에 축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시 C과장은 장남결혼식에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총 600만원의 축의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1,200만원 부과
- D대학의 E교수가 장녀결혼식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졸업생, 강사 등 6명에게 각 20만 원의 법정한도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나아가 E교수는 청첩장 배포를 넘어 본인의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결혼식을 공지하는 글을 기재하고 일부 지인들에게 모바일 청첩장뿐 아니라 자신의 계좌번호도 전달하여 넓은 범위의 지인과 직무관련자들에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점 등을 통해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6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조리
신고

- ♣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클릭)
- ♣ 감사관 핫라인(☎031-221-3650), 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국번없이 1398)